

화물인도에 따른 손해배상 -운송인의 동의없이 보세운송된 경우-

사건번호 : 94다55057 판결

선고일 : 19960312

사건명 : 손해배상(기)

출처 : 공96.5.1 [9], 1225

[판시사항 및 재판요지]

[1]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보세운송되어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화물의 인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보세운송된 다음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갑 회사의 자가 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갑 회사에 대한 화물의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운송인으로부터 갑 회사로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터 잡아 판단되어야 하고, 갑 회사의 자가 보세장치장에 의 입고가 관계 법규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거나(만일 강제되어 있다면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단계에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경우 무역거래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자가보세장치장의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인도의 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 운송계약상의 인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갑 회사에게 넘어갔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관세법상 보세운송 과정 중의 화물에 대한 점유자 - 보세운송은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가 그 명의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 뿐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세운송과정 중의 화물은 화주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 운송인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운송화물을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차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차인인 컨테이너 전용장치장 설영인으로서는 임차인인 운송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인이 아닌 제3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데,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는 운송물이 화주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장치되도록 강제하는 근거규정이라 볼 수 없고, 한편 보세운송요령(관세청고시 제90-659호) 제35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가 보세운송 신고를 함에 있어 운송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또 위 보세화물관리세칙 제11조에도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출고하는 때에 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정 구하여야 할 서류로 보세운송면장 사본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규상 보세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은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보세운송요령이나 보세화물관리세칙은 모두 관세의 확보라는 관세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보세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전문】

1996. 3. 12. 94다55057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30 선고 92나669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01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해상운송인인 일본회사 유센카이샤는 1991년 3월 경 미국회사인 프레드그루엔(이하 매도인 회사라 함)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인 우피 109,309파운드를 미국 포틀랜드항으로부터 우리나라 인천까지 운송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일 컨테이너 3개에 내장된 이 사건 화물을 컴퓨터호에 선적한 다음, 위 매도인 회사에 수하인을 원고은행, 통지처를 소외 K화학주식회사(이하 訴外증권社라 함)로 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하였다.

매도인 회사는 우피 등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 이른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거래방식, 즉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먼저 물품을 운송하여 수입지의 일정한 보세장치장에 장치하여 두었다가 수입업자를 선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신용장을 받은 다음 선하증권과 환어음 등을 거래은행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결제받는 형식의 무역거래방식을 취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화물의 매매방식도 이러한 거래방식에 따랐다.

한편 이 사건 화물은 1991년 4월 3일 부산항에 도착되어 양하된 다음 부산항 소재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Y)에 입고되어 보관되다가, 같은 달 23일 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된 후 보세운송되어 인천 북구 작전동 소재 소외회사의 부평공장 내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같은 해 7월 20일 관세법상의 통관절차나 해상운송인에 대한 화물인수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을 무단 반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상운송인의 국내선박대리점인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표창하는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위 선하증권의 통지처에 불과한 소외회사의 보세운송 동의요청을 받아들여 소외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하여 보세운송을 한 다음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은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고시 90-627호) 제5조 등 관세법규와 해운항만청 및 관세청의 행정적 자시에 따라 운송인은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장치시켜 둔 운송물을 장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보세장치장으로 운송·장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화주(선하증권상 통지처)가 자가보세장치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 및 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화주인 소외 회사가 인천지역에 소재한 자가보세장치장으로의 보세운송 및 장치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상 이 사건 화물의 운송목적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하여 내륙보세운송을 한후 이를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장치하여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한 후 소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한 것은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의 변경에 불과하고 수입화물의 통관절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일 위 단계를 화물인도라고 본다면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대해 그 보세운송시에 선하증권과의 상환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BWT 거래방식에서는 아직 수하인인 원고에게도 선하증권이 도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과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보세운송을 할 수 없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국내수출업체로 하여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를 신속히 통관하여 수출물품을 제조·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된 자가보세장치장 제도가 효용을 잃게 되므로, 위 단계에서는 운송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아직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가 자가보세장치장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무단 반출한 것은 원고나 피고에 대한 절도행위가 될 뿐이지,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이 사건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보세운송된 다음 소외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소외회사에 대한 이 사건 화물의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사